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변리사 비밀유지권 규정 신설 등〉

■ 김종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56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변리사의 사명 규정 신설	2
2. 변리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 규정 신설	4
※ 참고자료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종민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27.
3. 회부연월일 : 2026. 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리사 또는 변리사였던 자의 발명 등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뢰인이 변리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정보나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의 특허권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변리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비밀의 의사교환내용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변리사의 사명을 규정함으로써 변리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뢰인이 신뢰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3 및 제23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변리사의 사명 규정 신설

개정안은 변리사가 발명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여 산업재산권 제도 발전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리사의 사명’ 규정을 신설함(안 제1조의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조의3(변리사의 사명) 변리사는 발명자, 고안자 및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산업과 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한 산업재산권 제도 발전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u>

과거 「변리사법」은 변리사의 사명을 규정한 적이 있으나¹⁾,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변리사회의 회칙 준수 의무 등과 함께 폐지²⁾되어 현행법은 변리사의 사명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식재산권의 취득·활용·보호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변리사의 업무가 기업 또는 발명가 등 개별 법률소비자뿐만 아

1) 「변리사법」(법률 제2510호, 1973.2.8. 시행)

제1조의2(변리사) ① 변리사는 공업소유권에 관한 권익을 옹호하여 국가산업과 기술의 육성·보호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리사는 그 품위를 유지하고 변리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변리사법」(법률 제5826호, 1999.5.9. 시행)

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변리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변리사의 사명을 다시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변리사의 사명을 법률에 규정하면 변리사는 스스로 그 직무에 관하여 책임성·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법률소비자는 변리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변리서비스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나아가 양질의 지식재산 관련 정보가 창출·공유되어 국가 전체의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직업 관련 법률에 사명을 규정한 유사 입법례로는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가 있음.

직업 사명 규정 입법례

관련 법	조문 내용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세무사법	제1조의2(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관세사법	제1조의2(관세사의 사명)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2. 변리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 규정 신설

개정안은 변리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고 하는 자가 변리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인 의사교환(안 제23조의2제1항) 및 변리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자료(같은 조 제2항)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유지권 규정을 신설함.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3조의2(비밀유지권 등) ① 변리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의뢰인등”이라 한다)는 그 사이에서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변리사와 의뢰인은 변리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또는 행정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1.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2.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3. 변리사와 의뢰인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변리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의 비밀누설죄를 처벌³⁾함으로써 변리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변리사 또는 의뢰인의 비밀유지권(ACP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개정안을 통해 변리사와의 상담 내용이나 변리사의견서 등이 보호되는 근거가 마련되면 기업 등 의뢰인은 변리사를 통해 기업 비밀이 유출되지 않는다는 신뢰 아래 충분한 정보 공유 및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아가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a)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및 (b) 변호사 비밀유지권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짐.

(a) 먼저,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현재 국회에서 도입 논의 중인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참고자료 1)와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한데,

한국형 증거수집제도(Discovery)는 현행 특허침해 관련 제도로는 특허권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침해입증 및 손해배상액 산정이 곤란하다는 인식하에 증거수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① 전문가 사실조사, ② 자료보전명령, ③ 법정외 진술녹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임.

3) 「변리사법」 제23조(도용 및 누설의 죄) 변리사이거나 변리사였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발명자, 고안자, 창작자, 특허출원인 또는 실용신안·디자인등록출원인의 발명, 고안 또는 창작의 비밀을 누설(漏泄)하거나 도용(盜用)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대리인-의뢰인간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

증거수집제도는 증거의 투명한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유출의 우려 등 증거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개정안들은 변호사 비밀유지권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면서도⁵⁾ 변리사 비밀유지권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만약 증거수집제도 내에서 변리사 비밀유지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경쟁업체가 기술탐지의 수단으로 특허소송 및 증거수집제도를 역이용하는 등 기술 유출의 가능성이 있고, 이를 우려하여 의뢰인이 변리사와 제한된 의견을 교환하게 되면 의뢰인이 변리사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특히, 현재 국제예양⁶⁾에 따라 외국의 특허소송에서 한국 기업에게 증거개시명령을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가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한국 기업에게 증거개시명령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상대 기업은 비밀유지권으로 보호되는 반면 한국 기업은 보호받지 못하게 되어 한국 기업이 소송상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⁷⁾.

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3972호)

제128조의7(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 ① 법원은 제128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가 법률의견을 구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목적으로 그의 변호사 등 대리인 간에 상호 주고 받은 비공개 자료 또는 상대방 당사자나 그의 변호사 등 대리인이 소송을 예견하고, 그 소송의 준비나 수행을 목적으로 작성한 비공개 자료(이하 “법률자문서등”이라 한다)를 그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6) 주: 국제예양(Comity)은 국제법상 개념으로 타국의 입법·사법·행정적 행위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함.

7) 주: 증거개시제도가 없는 국가의 대리인은 증거개시제도가 있는 국가에서의 소송에서 증거개시를 강제받지 않으므로 현행법상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소송에서 한국 기업에 증거개시를 강제할 수 없는데, 만약 우리나라가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면 미국 소송에서

참고로 미국, 영국 등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변
리사의 비밀유지권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참고자료 2).

(b) 다음으로 변호사 비밀유지권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는 최근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규정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였고(2026년 1월 29일),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 설>

제26조의2(비밀유지권 등) ①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이하 이 조에
서 “의뢰인등”이라 한다)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
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
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
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1.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2.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
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3. 변호사와 의뢰인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
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증거개시를 강제받게 됨.

또한, 증거개시제도가 있는 국가에서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타국 대리인이 그의 자국에서 비
밀유지권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타국 대리인에 대해서도 비밀유지권을 인정함.

기술침해 소송에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경우 원안에는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직접 규정하였지만 「변호사법」의 개정을 반영하여 「변호사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어⁸⁾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2026년 1월 29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 설>

제40조의7(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 ① 법원은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법」 제26조의2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이하 “의사교환등”이라고 한다)를 그 조사의 범위 및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되는 의사교환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해당하는 자료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정전문가는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 중에 제3항에 따라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비공개 자료 이외에 상대방 당사자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전문가는 그 사실을 제40조의6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기재된 자료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변호사법」에 변호사 비밀유지권 규정이 도입된 상황에서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수정의결

「변리사법」에 변리사 비밀유지권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종전에는 우리나라의 비밀유지권 규정 부재로 국제예양에 따라 외국의 특허소송에서 한국 기업이 보호받아 왔던⁹⁾ 변리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이 부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추가로, 한국 기업이 외국의 특허소송에서 현재 수준의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변호사법」상 변호사 비밀유지권 규정의 시행일에 맞게 「변리사법」에 변리사의 비밀유지권 규정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⁰⁾.

한편,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영미법에서 다수의 판례를 통해 세부 범위와 한계에 관한 법리가 형성되었는데 이러한 경험이 없는 우리 법제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일정 부분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비밀유지특권(영미법)과 비밀유지의무(대륙법) 비교

비밀유지특권(영미법)	비밀유지의무(대륙법)
○ 의뢰인의 권한 문제 ○ 의뢰인·대리인 의사소통에만 적용 ○ 법원의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절대적 권리로 행사 가능	○ 대리인의 윤리 문제 ○ 비밀의 습득경위 불문, 적용범위 넓음 ○ 법원이 정보 공개가 우선된다고 판단시 비밀유지의무 주장 배척 가능

자료: 지식재산처

9) 주: 증거개시제도가 있는 국가에서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타국 대리인이 그의 자국에서 비밀유지권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타국 대리인에 대해서도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므로 우리나라 법률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규정하면서 변리사의 비밀유지권은 규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게 되면 미국 소송에서 변리사·의뢰인 사이에 상담 내용, 변리사 의견서 등의 증거 개시를 강제받게 될 것임.

10) -개정 「변호사법」 시행일: 2027년 2월 20일
- 「변리사법」 개정안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변리사 또는 의뢰인이 비밀유지권 제도를 악용하여 증거자료를 은닉하는 경우 증거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특허권자의 권리보호 및 실질적 피해구제라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의 취지에 방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증거수집제도 및 비밀유지권의 도입 이후에도 제도가 안정화되기까지 비밀유지권의 구체적 범위, 실제 운영 동향, 부작용 및 관련 판례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추가적으로, 안 제23조의2제2항과 관련하여 변리사는 특허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조력을 주는 경우가 많고 미국·영국 등 외국의 특허심판에서도 변리사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제 기준에 맞게 ‘심판’을 추가하는 방안과,

안 제23조의2제3항제2호는 해석상 범위가 포괄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 「변호사법」과 유사하게¹¹⁾ 변리사의 위법행위를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의 예시로 규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1) 「변호사법」(법률 제21357호, 2027.2.20. 시행, 2026.2.19. 일부개정)

제26조의2(비밀유지권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2.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의 비밀유지권에 대한 내용 없이 증거수집제도가 도입되면 해외 소송에서 한국 기업이 변리사의 조력을 받은 모든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어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58

참고 1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개정안 발의 현황

연번	의안 번호	발의자	발의일	경과	법안명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 전명령	법정의 진술능력
1	2203385	김정호	24.8.29.	소위계류	특허법	○	○	
2	2204924	고동진	24.10.25.	소위계류	특허법		○	○
3	2204925	고동진	24.10.25.	소위계류	실용신안법		○	○
4	2207728	서일준	25.1.22.	소위계류	특허법	○		
5	2207729	서일준	25.1.22.	소위계류	실용신안법	○		
6	2209043	김동아	25.3.18.	소위계류	부정경쟁방지법	○		
7	2210890	송재봉	25.6.17.	소위계류	특허법	○	○	○
8	2210900	송재봉	25.6.17.	소위계류	부정경쟁방지법	○	○	○
9	2211487	박지혜	25.7.15.	소위계류	실용신안법	○	○	○
10	2212429	정진욱	25.8.27.	소위계류	특허법	○	○	
11	2213972	곽상언	25.11.6.	소위계류	특허법	○	○	○
12	2214270	곽상언	25.11.14.	소위계류	실용신안법	○	○	○
13	2214278	곽상언	25.11.14.	소위계류	부정경쟁방지법	○	○	○
14	2214644	김종민	25.11.27.	미상정	특허법	○		

※ 법안 발의·경과 현황은 2026년 3월 1일 기준

참고 2

미국 및 영국 비밀유지권

	미국	영국
정의	Attorney-Client Privilege(ACP)	Legal Professional Privilege(LPP)
법적근거	(변호사) Federal Rules of Evidence 501, 502 (변리사) 판례로 인정, USPTO는 행정규칙으로 명문화(37 C.F.R. § 42.57)	(변호사) 판례로 인정 (변리사) 특허법(280조), 상표법(87조)에 명문화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CDPA) 제280조 (Privilege for communications with patent agents) ※ 'patent agents'는 변리사 시험에 통과한 자로서 '07년 부칙을 개정하여 'patent attorney'로 수정됨
보호요건	Attorney-Client Communication Privilege 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② 의사교환이 있을 것, ③ 기밀성이 있을 것, ④ 법적인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기 위한 목적일 것 (예외) 단순사실이나 제3자에게 공유된 정보, 범죄·사기 등을 목적으로 한 법률자문은 제외 Attorney work product - 소송이나 재판을 준비하면서 작성된 유형 또는 무형의 자료 (예외) 상대방 당사자가 과도한 어려움 없이 동등한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실질적 필요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공개 가능	Legal Advice Privilege (법률자문 특권) - 변호사(solicitor, barrister 등)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법률 자문 의사소통 보호 ① 의뢰인-변호사 사이에 행한 ② 비밀 의사교환으로서 ③ 법적 자문 또는 조력을 목적으로 하였을 것 Litigation Privilege (소송 특권) -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송 목적(지배적인 목적)을 위해 제3자와 작성·교환한 문서도 보호 (예외) 범죄/사기 예외, 특정 관계자간 예외, 실정법 규정에 따른 예외, 규제기관 제출
변리사	특허출원 및 심사 관련 법률자문은 변호사-의뢰인 특권과 유사하게(patent-agent privilege) 보호를 받는다. In re Queen's University at Kingston, 820 F.3d 1287 (Fed. Cir. 2016) USPTO의 규칙 제정 (2017년) Queen's University 판결 직후, USPTO는 행정규칙으로 명문화 37 C.F.R. § 42.57 (Privilege for communications with domestic and foreign patent practitioners) 내용: 특허심판원(PTAB) 절차에서 미국 특허 에이전트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 특허대리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도 변호사-의뢰인 특권과 동일한 보호를 부여한다고 명시	Legal Advice Privilege 변리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법률적 자문(특허 출원, 등록 전략, 권리 범위 해석, 침해 가능성 분석 등)은 모두 보호 사내 변리사(in-house patent attorney)도 법률적 성격의 자문을 하면 보호 범위에 포함 Litigation Privilege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변리사와 의뢰인 또는 제3자 간 소송 준비 목적으로 작성·교환한 문서도 보호됨. 예: 침해소송 준비 보고서, 전문가와의 소통, 증거 분석 자료.